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99491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나994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9445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3. 9. 14.

판결선고 2023. 10. 1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94455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21. 11. 21.경 D을 대리한 E과 사이에 안산시 F 대 407㎡ 중 207㎡, G 대 145㎡ 중
36㎡, H 전 50㎡ 중 1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4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4,900만 원은 2022. 3. 10.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는 ‘공사비용(도로, 상수도, 우수로,
분할 인.허가, 측량외) 15,000,000원은 원고에게 별도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2021. 12. 2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공동매수인으로 자신의 딸인 피고 C를
추가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위 인정사실과 갑제4, 6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B와 D을 대리한 E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평 단가1) 로

계산하여 총 7,900만원 정도로 산정한 다음 위 토지 공사에 소요된 이 사건 공사대금 1,500만원을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매도인 D에 대한 매매대금은 나머지 6,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들은 피고 B와 D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피고들과 D 사이의 매매계약으로 변경한 다음 2022. 3. 7.경 위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항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공사비 좀 조종해주세요, 천만원만 받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 체결의 동기나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은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내지 피고들의 병존적 채무인수)으로 봄이 타당하다²⁾.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³⁾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E이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피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은희, 판사 이국현, 판사 김용태

1) 위 F 대 63평은 평당 105만원, 위 G 대 11평과 H 전 4평은 평당 95만원으로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법률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택한다.

3) 피고들은 공동매수인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서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